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4818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근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26.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가소3541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37,117원 및 그 중 12,705,292원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9. 26. '소외 회사가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잔존가치 14,086,6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48개월 간 이용하면서 원고에게 월 납부액 609,100원(= 월 임대료 556,600원 + 월 보험료 52,500원, 매월 20일 지급, 연체이율 연 24%)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설대여(리스,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시 소외 회사가 월 납부액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후 기간 내 소외 회사가 위 의무를 미이행시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20. 6. 이후부터 계속 월 납부액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체된 월 납부액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고 최고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계속 월 납부액을 납입하지 않자 2020. 7. 10.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월 납부액 연체금 등 채무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1. 2. 22. 기준으로 청구원금 12,705,292원(연체금액 1,012,000원, 중도해지수수료 3,909,436원, 초과은행부담금 6,394,560원 등), 지연배상금 1,531,825원 합계 14,237,117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월 납부액 연체금 등 채무액 합계 14,237,117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청구원금 12,705,29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다음날인 202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식적 대표이사라는 주장

(1) 피고는 D과 E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D과 E이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고, 이 사건 차량도 D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D과 E은 소외 회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확약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D이 2018. 11. 19. 피고에게 ‘피고는 법인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는 조건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고, 소외 회사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E과 D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E과 D, 피고가 내부적으로 약정한 내용으로서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2018. 6.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D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2018. 12. 19.과 2019. 6.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금융기관 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참조). 또한 리스계약은 그 계약 당시 이미 리스료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었고, 다만 그 채무액이 월할되어 그 각 분할금의 이행기가 여러 달에 걸쳐 나뉘어져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따라서 보증인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인을 선임 대표이사로 교체하였다거나 채권자로부터 보증책임을 면제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바로 위의 사유만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자동적으로 선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되어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7869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월 납부액을 48개월 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불확정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7, 11호증,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26.과 2018. 11. 15. 원고에게 보증인변경을 위한 심사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8. 12. 19.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8. 12. 31. 소외 회사와의 사전협의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신용 및 경력 증명이 미흡하고, 주주명부 확인에 의해 전 보증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표이사 변경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보증인이 피고에서 D으로 교체되었거나 피고의 보증책임을 원고가 면제했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박성규, 판사 강혁성